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안내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의 합격자 배수 및 시험 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1. 2023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로 확대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 제1항)

2. 2025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 형법 폐지)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별표 6의1)

또한, 제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퍼센트에서 행정법 10퍼센트, 민법 30퍼센트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3. 변경사항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된 사항
제1차 시험 합격자 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제2차 시험 합격자 수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2) 2025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가. 제1차 시험과목

직 렬	현 행	변경된 사항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공 통	1. 헌법, 2. 민법, 3. 형법, 4. 영어, 5. 한국사	1. 헌법(절대평가), 2. 언어논리, 3. 자료해석, 4. 상황판단, 5. 영어, 6. 한국사

나. 제2차 시험과목

직 렬	현 행	변경된 사항
법원사무직렬	1. 행정법(20%) 2. 민법[친족·상속법 제외](20%) 3. 형법(20%) 4. 민사소송법(20%) 5. 형사소송법(20%)	1. 행정법(10%) 2. 민법(30%) 3. 형법(20%) 4. 민사소송법(20%) 5. 형사소송법(20%)
등기사무직렬	1. 행정법(20%) 2. 민법[친족·상속법 제외](20%) 3. 상법[총론, 회사편](20%) 4. 민사소송법(20%) 5. 부동산등기법(20%)	1. 행정법(10%) 2. 민법(30%) 3. 상법[총론, 회사편](20%) 4. 민사소송법(20%) 5. 부동산등기법(20%)